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 신설〉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76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 신설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6.
3. 회부연월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국세·지방세의 체납 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는 통일된 가산금 징수 체계가 적용되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불이익이 누적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별 법령별로 가산금 부과 규정의 유무가 상이하여 동일한 금전적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에 이르나, 이 중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는 항목은 1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수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체납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를 지연하거나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

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가산금 체계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기인한 체납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금전적 제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 신설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u>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u> 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 ----- ----- <u>이</u> <u>법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u> ----- ----- ----- ----- -----.
7. ~ 14. (생략)	7. ~ 14.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u>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가산금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1. 제재형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위반행위의 제재 및 그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u> <u>2. 납부지연형 가산금: 부담금, 조정금 등 제1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u> <u>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 <u>③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u>

현 행	개 정 안
	<u>항의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u> <u>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아니한다.</u> <u>1. 제재형 가산금: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u> <u>2. 납부지연형 가산금: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u> <u>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별 금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별 법령별로 가산금 부과 규정 유무가 상이하여 체납에 따른 불이익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¹⁾. 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금전적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개정안은 가산금 규정을 두어 가산금을 ① 위반행위의 제재 및 그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형 가산금과 그 외 납부지연에 대한 이자 성격이 있는 납부지연형 가산금 등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한편, 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을 징수하도록 하며, ③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유형별 가산율을 적용한 증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고, ④ 납부고지서별 금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징수 대상	▶(제재형)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위반행위의 제재 및 그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납부지연형) 부담금, 조정금 등 제재형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내용	▶(가산금) 3% ※ 체납액 45만원 미만인 경우 가산금 미징수 ▶(증가산금) 납부기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징수 -(제재형) 1.2% -(납부지연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140개) 중 13개 항목(개발부담금 등)에서 가산금 운영

이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 납부자와 장기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 가산금의 대상이 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범위

개정안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²⁾도 있으므로, 징수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 가산금의 최소 징수기준 관련

개정안에서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별 금액이 최소 45만원 이상 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납세자의 편익, 징수로 얻을 수 있는 행정적 이익과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i) ‘납부고지서’의 금액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금액을 의

2) 가령 “지적재조사조정금”은 법령 위반이나 귀책 사유 없이 지적재조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정산하는 성격이므로 가산금 대상 제외 필요(국토부, 인천 미추홀구·연수구, '26.3월)

미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가산금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ii)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안의 증가산금 개념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³⁾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역시 이를 참고하여 최소 징수기준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금액 기준으로 하고, 증가산금에만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산금 제도 비교]

구분	국세	지방세	과태료	국세외수입(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외수입채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제8조	개별 법령에 따라 징수 * 140개 중 13개 항목에서 가산금 운영
내용	◦ 납부지연가산세 - 3%(가산금 개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월 0.67%, 증가산금 개념)	◦ 납부지연가산세 - 3%(가산금 개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월 0.66%, 증가산금 개념)	◦ 가산금: 3% ◦ 증가산금: 월 1.2%	◦ 법률별 상이 ※ 정태호의원안 : 1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재경부, 국세 준용하는 방향 병행 검토)	◦ 법률별 상이
한도	5년(60개월)	60개월	60개월	법률별 상이	법률별 상이

문 의 처

02)6788-5333